

의안번호	2209496
의 퇴 인	이건태의원
회 답 일	2025.4.24.
추계번호	25D1979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노인학대예방의 날)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와 홍보 실시	의무규정
2	안 제5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 제작·배포	의무규정
3	안 제6조(긴급전화의 설치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의무규정
4	안 제7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의무규정
5	안 제15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재량규정
6	안 제25조제6항(학대범죄 피해노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검사는 학대범죄피해노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노인 보호 절차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42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인학대행위자의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노인학대예방의 날)	현재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안 제5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제작·배포·송출
3	안 제6조(긴급전화의 설치 등)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중이며 노인학대 신고 어플리케이션도 배포·운영중
4	안 제7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중
5	안 제15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현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중
6	안 제25조제6항(학대범죄피해노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안 제42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2. 상세 사유

- 노인학대예방의 날 지정(안 제4조), 노인학대예방 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안 제5조), 긴급전화의 설치(안 제6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안 제7조),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안 제15조)의 경우 이미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12억 9,400만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90억 1,500만원,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운영지원에 24억 3,000만원을 편성함
 -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8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 비용은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는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 어플리케이션도 배포·운영 중

□ 학대범죄피해노인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안 제25조제6항)

- 제정안은 검사는 학대범죄피해노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노인 학대범죄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안 제42조)

- 현재 법무부에서는 2025년 예산 기준으로 보호관찰활동(1635-300) 사업 중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집행에 119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학대범죄 관련 보호관찰활동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는 않음
- 개정안에 따라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보호관찰활동이 다른 범죄에 대한 보호관찰활동과 별도로 규정되어 이루어질 경우, 노인학대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을 위한 별도의 강의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강사 강의료 지급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연간 노인 학대범죄의 건수 및 법원에 의한 보호처분 판결 건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